#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(문진석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3589

발의연월일: 2020. 9. 8.

발 의 자:문진석・김교흥・김두관

서영석 · 송갑석 · 이상헌

이정문 • 이형석 • 인재근

조오섭 의원(10인)

#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재 정부는 월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를 대상으로 국민주택규모(전용면적 85㎡이하) 이하 또 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에 대하여 월세세액 공제를 하고 있음.

하지만, 현재 월세 공제 기준으로는 증가하고 있는 월세 부담에 비해 충분한 공제 혜택이 주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, 기존 10%의 월세 공제율을 12%로 상향하고, 총급여액이 5천5 백만원 이하 근로자에게는 월세공제율을 15%로 상향하여 보다 큰 혜택을 부여하고자 함.

또한, 공제한도액을 연 1천만원까지 상향하여 무주택 근로자의 월세 부담을 경감하여 실질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하고자 함(안 제95조의2). 법률 제 호

##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5조의2제1항 본문 중 "100분의 10"을 "100분의 12"로, "100분의 12" 를 "100분의 15"로 하고, 같은 항 단서 중 "750만원"을 "1천만원"으로 한다.

### 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| 현 행                      | 개 정 안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
| 제95조의2(월세액에 대한 세액공       | 제95조의2(월세액에 대한 세액공 |
| 제) ①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        | 제) ①               |
|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대통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
| 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의 세대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
| 주(세대주가 이 항, 제87조제2       |                    |
| 항 및 「소득세법」 제52조제4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
| 항·제5항에 따른 공제를 받지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
|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
| 성원을 말한다)로서 해당 과세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
| 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
| 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
| (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
| 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
|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을 초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
| 과하는 사람은 제외한다)가 대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
| 통령령으로 정하는 월세액을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
|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의 <u>100</u> | <u>100</u>         |
| 분의 10[해당 과세기간의 총급        | 분의 12              |
| 여액이 5천500만원 이하인 근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
| 로소득이 있는 근로자(해당 과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
| 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
|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
| 금액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사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

| 람은 제외한다)의 경우에는 <u>10</u>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<u>0분의 12</u> ]에 해당하는 금액을 |
|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           |
| 세액에서 공제한다. 다만, 해당         |
| 월세액이 <u>750만원</u> 을 초과하는  |
|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         |
| 것으로 한다.                   |

②・③ (생 략)

| <u>10</u>     |
|---------------|
| <u>0분의 15</u> |
|               |
| <u>.</u>      |
| 1천만원          |
|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|
| ②・③ (현행과 같음)  |